

해외이주신고 확인서

이주번호		이주국		이주종류	
구 분	성 명	주민등록번호	신고인과의 관계	비고(연락처)	
신고인					
동반자					
주 소					
용 도					

「해외이주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 사람의 해외이주신고 사실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외 교 부 장 관



유의사항
1. 이 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.
2. 이 신고 확인서를 동 주민센터 또는 읍·면사무소, 병무청, 은행에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(기재한 용도 이외의 사용 또는 복사본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)"로 한다.